



RE100의 법제화 및 이행 지원 제도 시행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RE100*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행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이 2021. 1. 1.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* RE100: '재생에너지(Renewable Energy) 100%'의 약자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%를 풍력·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

본 고시 개정으로 “제7장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” 부분이 신설되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신설 항목	규정	주요 내용
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근거	5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소비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전기소비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 「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」를 발행 받음
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제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지정	5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소비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기관: <u>신·재생에너지센터</u> 확인서 발급, 관리시스템 운영,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에 관련된 제도 총괄 운영 운영기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전력공사(한전) → 녹색프리미엄 및 전력구매계약 운영 신·재생에너지센터 →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공급인증서(REC) 구매제도 운영
재생에너지 사용수단 마련 및 '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' 발급절차	57조 ~ 63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사용 수단] 기업 등 전기소비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이행수단을 마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녹색프리미엄의 납부: 전기소비가 한전에 녹색 프리미엄이 부과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을 납부 전력구매계약 체결: 전기소비가 한전을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(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도 개정) 공급인증서(REC) 구매: 전기소비가 전담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REC 구매 지분참여: 전기소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출자 후 전력구매 또는 인증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자가소비용설비 설치: 사업장 등 내에 자가소유의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 기타 전기소비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장관이 인정한 사항: 추후 새로운 수단 추가 가능

>> 다음페이지에 이어서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등록 및 확인서 발급]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실적 제출시 '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' 발급 * 전기소비자는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
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	64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 사용 수단 중 ②~⑤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시,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녹색프리미엄 재원 활용 및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	65조 6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녹색프리미엄 재원 활용 전담기관이 녹색프리미엄에 따른 판매 이익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 사업*에 재투자하여 활용 *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, 금융지원사업, 복지지원사업, 기반구축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녹색프리미엄 투자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·심의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*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, 전담기관, 운영기관, 산·학·연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

그동안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RE100 참여가 저조했으나, 2019년 말부터 정부가 국내 기업들 역시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이번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도 RE100의 실행수단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화우의 ESG GROUP은 기업이 새로운 ESG 동향에 부합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ESG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점검하고,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의 ESG 동반자로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<p>박상훈 parksh@yoonyang.com TEL. 02-6003-7548</p>	<p>법무법인(유) 화우 (YOON & YANG LLC)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9층 (우)06164 TEL: 02-6003-7000 FAX: 02-6003-7036 www.hwawoo.com; www.yoonyang.com</p> <p>법무법인 화우 소개자료 지난 뉴스레터 보기</p>
<p>한상구 sgghan@yoonyang.com TEL. 02-6003-7139</p>	
<p>신승국 synn@yoonyang.com TEL. 02-6182-8502</p>	
<p>이광욱 kwlee@yoonyang.com TEL. 02-6003-7535</p>	
<p>이근우 klee@yoonyang.com TEL. 02-6003-7558</p>	
<p>조준오 jojo@yoonyang.com TEL. 02-6003-7080</p>	